

『정선 목민심서』를 내며

이 책은 다산연구회의 『역주 목민심서』를 대중적 교양서로 개편한 것이다. 본래 전부 여섯 권인데 내용을 추리고 뽑아 대폭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1부 6조, 도합 12부 72조로 구성된 체제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목민심서』라 하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방대한 저술목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는 데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산 스스로 언표하였듯이 그의 학문체계는 유교경전의 신해석에 기초한 주체의 확립,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로 설계한 천하경륜이라는 안팎의 관계로 구축되어 있다. 다산학의 체계상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위상이 잡힌 『목민심서』는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렇듯 다분히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목민심서』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마음먹고 읽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까닭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요컨대 『목민심서』는 자기 시대의 현실에 대한 저자 자신의 뼈저린 고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진정으로 강구한 것이다. 민(民)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한다. 거기에

는 다산의 고도로 독창적인 인간학이 개재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 '목민'이란 개념이 곧 『목민심서』의 '키워드'이다. 유교적 정치철학인 인정·애민의 정치가 이미 허구화된 상황에서 목민정신의 회복을 갈망한 그 해법은 각주구검(刻舟求劍)처럼 시대역행으로 비치기 쉽다. 그런데 이 고대적 이상은 현재적 실천과 하나로 어울려 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이완될 대로 이완된 말기적 징후 속에서 신음하는 민생의 구원이 일차적 과제였지만, 인간애와 함께 인간성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그 의미는 능히 진실하고도 심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는 대단히 풍부한 사실과 논리로 엮어졌고 또 갖가지 미덕을 간직한 책이다. 실사구시의 방법론으로 모범을 보인 저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당시의 실상과 관행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병폐의 원인을 찾고 치유책을 고안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며, 무섭도록 현실적이다. 『역주 목민심서』의 「개역판서(改譯版序)」에서 “우리 전근대 사회의 참모습들을 가장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제시해놓은 책이 아마도 『목민심서』가 아닌가 한다”고 언급한 것은 대개 이런 면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민심서』 자체의 특장과 미덕이 거기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일면도 있는 것 같다. 일반 독자가 읽어내기에는 실로 만만치 않다. 지금 대중적 교양서로 이 책을 펴내는 이유이다. 이에 문장을 요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다듬었으며,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자주(自註)와 역주들을 빼거나 본문에 풀어 넣었다.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어디까지나 원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절한 일이었다. 전체를 간추리는 과정에서도 오늘날에 의미가 있고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을 뽑으면서 첫째로 저자의 고심과 탁견이 담긴 대목

이라면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썼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풍속화들을 끼워넣었는데 물론 원전에 없지만 동시대의 연관 자료로서 독자들의 생생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산은 「자서(自序)」에서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고 끝을 맺었다. 그 자신이 정치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까닭에 붙인 말이다. 이 맺음말은 실로 비장하다. 오늘의 현실에서 다른 의미로 또 ‘심서’가 된 셈인데 그 참뜻이 살아나기를 고대한다. 이 책은 축약본이다. 교양적 차원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분들은 응당 『역주 목민심서』, 더 나아가 그 원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20일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를 마치면서

드디어 『목민심서』의 역주(譯註) 작업이 끝나게 되었다. 1975년 가을에 『목민심서』 독회(讀會)를 시작했으니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큰 일을 하나 마무리지은 듯 흐뭇한 마음과 함께 고달픈 일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역주에 신중을 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좀더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목민심서』는 원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굴동(橋洞) 유배지에서 구상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했던 것이다. 기나긴 유배생활이 끝날 무렵인 1818년 봄에 초고(草稿)가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향 마현(馬峴)으로 돌아올 때 이 초고를 짚어지고 와서 다시 손질하고 크게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1821년 봄이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거저(巨著)를 남긴 작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던가?

『목민심서』는 요컨대 민(民)과 국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산은 '민'의 주체성을 긍정하여, '민'의 자율적 참정(參政)과 의사(意思)의 반영으로 체제(體制)를 갖추는 것이 원리에 합당한 것으로 보았다. 실로 지천(至賤)의 상태에서 신음하던 '민'에 대한 연민과 인간적 신뢰에 '민'의 역사 추진력에 대한 튼튼한 믿음을 일체화시켜, 그 바탕에서 '민'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탕론(湯論)」과 「원목(原

牧)」 등의 논설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이 그의 기본사상이다.

문제는 실천의 측면이다. 당시에는 그의 진보적 정치사상을 구현시킬 만한 사회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아득한 경제이론(經世理論)은 결국 탁상공론으로 그칠 뿐이다. 말세적(末世的)인 부패와 횡포, 과중한 수취(收取)로 인해서 '민' 일반의 생존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긴급히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라고나 할까. 『목민심서』는 중환자에 대한 처방에 준하는, 막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려는 구민(救民)의 절실한 의도로 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개혁과 연관된 여러 본질적인 문제는 우선 유보해둔 선상에서 오직 백성의 질고(疾苦)를 대증요법(對症療法) 식으로 치유하여 보다 개선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를 그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목민심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도리가 없다는 등의 언급과 함께 긴 한숨 소리가 들리며, 그의 기본사상이 저류(底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조선후기 급격한 역사변동의 과정에서 이미 공동화(空洞化)된 전통적 민본(民本) 이념에 새로운 정치사회적 실체를 담으려고 한 사상적 노력이 저술의식(著述意識)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마치 종합검진을 하듯, '민'이 처한 현실, 정치·사회·경제적 환경과 그 역사적 배경, 봉건국가 통치의 허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모순의 양상을 치밀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총체성의 시각을 잃지 않고 고찰 분석해내고 있다. 『목민심서』의 가장 빛나는 내용이다. 거기에 조선후기 사회 전체의 실상이 거울처럼 드러나서 그 시대를 폭넓게 통찰할 수 있고 나아가 오늘 우리의 착잡한 현실을 비추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차례

우리 모임은 당초 7명으로 출발한 것이 어느덧 16명으로 늘어났다. 독회 10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연구와 강의로 각자 분주한 일과에서 공동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쪼개낸다는 것부터 보통의 열성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웠거니와, 한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을 중지하여 『역주 목민심서』도 중동무이로 끝날 곤경을 넘기기까지 하였다. 이 완간(完刊)이 다산선생 서거(逝去) 15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더욱 뜻이 깊다. 우리 모임은 『목민심서』 독회를 통해서 얻은 다산학(茶山學)에 대한 이해와 다져진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를 기초로 삼아 새로운 연구의 공동의 전진을 기약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창작과비평사 여러분께 감사 را 드리면서, 특히 교정을 맡아주신 정해렴(丁海廉) 씨의 정밀한 눈길이 글자마다에 미쳐 있음을 밝혀둔다.

1985년 겨울
다산연구회

『정선 목민심서』를 내며 · 5
『역주 목민심서』를 마치면서 · 8
『자서(自序)』 · 15

【제1부】 부임(赴任) 6조

1. 임명을 받음 · 21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24
3. 조정에 하직하기 · 26
4. 부임 행차 · 30
5. 취임 · 33
6. 업무를 시작함 · 37

【제2부】 율기(律己) 6조

1. 바른 몸가짐 · 45
2. 청렴한 마음 · 55
3. 집안을 다스림 · 65
4. 청탁을 물리침 · 68
5. 씩씩이를 절약함 · 74
6. 베풀기를 좋아함 · 79

【제3부】 봉공(奉公) 6조

1. 교화(教化)를 펼침 · 87
2. 법도를 지킴 · 89
3. 예의있는 교제 · 93
4. 보고서 · 101
5. 공물 바치기 · 105
6. 차출되는 일 · 109

【제4부】 애민(愛民) 6조

1. 노인 봉양 · 121
2. 어린이를 보살핌 · 123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 126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 · 130
5. 병자를 돌봄 · 133
6. 재난을 구함 · 135



【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 · 141
2. 관속들을 통솔함 · 153
3. 사람 쓰기 · 155
4. 인재의 추천 · 161
5. 물정을 살핌 · 163
6. 고과제도 · 171

【제6부】 호전(戶典) 6조

1. 전정 · 177
2. 세법 · 180
3. 환곡의 장부 · 186
4. 호적 · 197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 199
6. 농사 권장 · 203

【제7부】 예전(禮典) 6조

1. 제사 · 213
2. 손님접대 · 214
3. 백성을 가르침 · 215
4. 교육을 진흥시킴 · 220
5. 신분 구별 · 224
6. 과거공부를 힘쓰도록 함 · 226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 · 231
2. 군사훈련 · 235
3. 병기 수선 · 238
4. 무예 권장 · 239
5. 변란에 대응하는 법 · 241
6. 외침을 막아내기 · 244



【제9부】 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 · 253
2. 형사사건의 판결 · 264
3. 형벌을 신중하게 씌움 · 267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 270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 274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 276

【제10부】 공전(工典) 6조

1. 산림 · 283
2. 수리사업 · 286
3. 관아건물 수리 · 289
4. 성의 수축과 보수 · 293
5. 도로 · 294
6. 공작 · 297

【제11부】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 305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 309
3. 세부계획 · 313
4. 시행방법 · 315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 320
6. 나무리 · 323

【제12부】 해관(解官) 6조

1. 임무고대 · 327
2. 돌아가는 행장 · 328
3. 수령을 유임하도록 하는 청원 · 331
4.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 · 333
5. 수령의 재임중 사망 · 334
6.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 337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 341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342

일러두기 · 343

자서(自序)

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으면서 12목(牧)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였으며, 문왕이 정치제도를 세울 때 사목(司牧)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는 평륙(平陸)에 갔을 때 추목(芻牧, 가축 사육)을 백성을 기르는 데 비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성을 부양하는 일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의 남긴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도(司徒)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修身)케 하고, 태학(太學)에서는 왕족 및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가르쳐 각기 수신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목민의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는 너무 멀어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도(道) 또한 점점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친구령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나의 선친께서 조정의 후한 대우를 받아 두 현의 현감(縣監), 한 군의

군수(郡守), 한 부의 도호부사(都護府使), 한 주의 목사(牧使)를 지냈는데, 모두 잘 다스린 공적이 있었다. 소자는 비록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좃아 배워서 다소간 들은 바가 있었고, 보아서 다소간 깨달은 바도 있었으며, 물러나 이를 시험해봄으로써 다소간 체득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귀양살이하는 몸이 되어 쓰일 데가 없게 되었다.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한 18년 동안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반복해서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익혔으나, 생각해보니 수기의 학은 학문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중국의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역사서와 기타 저술 및 문집 등의 여러 서적에서 옛날의 사목(司牧)이 백성을 기른 자취를 골라 위아래로 뽑아 정리·분류·수합하여 차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남쪽 변두리 땅에서는 전세(田稅)와 공부(貢賦)를 아전들이 농간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생겨났는데, 나의 처지가 낮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상세하여 이것들 또한 종류별로 기록하였으며, 나의 앞은 견해를 덧붙였다. 모두 12부인데 1부는 부임(赴任), 2부는 율기(律己), 3부는 봉공(奉公), 4부는 애민(愛民)이며, 5부에서 10부까지는 육전(六典, 이·호·예·병·형·공)에 관한 사항이고, 11부는 진황(賑荒), 12부는 해관(解官)이다. 12부가 각각 6조로 구성되었으니 모두 72조이다. 여러 조를 합하여 한 권을 만들기도 하고,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을 만들기도 하였으니, 통틀어 48권으로 하나의 저서가 되었다. 비록 시대를 따르고 습속을 좃았기 때문에 위로 선왕의 헌장(憲章)에 부합될 수는 없을망정, 백성을 기르는 데는 조례를 갖춘 셈이다.

고려말에 비로소 오사(五事), 즉 수령의 직무를 다섯 가지 방면으로 분류해 수령들을 고과(考課)하였고, 우리 조선에서도 그대로 하다가 후에 칠사(七事)로 늘렸다. 오사나 칠사 모두 대체의 방향만을 독려한 것일 따

름이었다. 수령이라는 직분은 관장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여러 조목을 차례로 드러내더라도 오히려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생각해서 행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첫머리와 맨 끝의 2부를 제외한 나머지 10부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있어서 자기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理縣譜)』를, 유이(劉彝)는 『법범(法範)』을, 왕소(王素)는 『독단(獨斷)』을, 장영(張詠)은 『계민집(戒民集)』을,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호태초(胡太初)는 『서언(緒言)』을, 정한봉(鄭漢奉)은 『환택편(宦澤篇)』을 저작하였다. 이 모두 이른바 목민(牧民)에 관한 책이다. 오늘날 이런 책들은 거의 전해오지 않고 오직 음란한 말과 기이한 구절만이 일세를 횡행하니, 나의 이 책인들 어떻게 전해질 수 있으랴? 그러나 『주역』에 이르기를 “앞사람의 말씀이나 지나간 행적들을 많이 익혀서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내 덕을 쌓기 위한 것이지, 어찌 꼭 목민에만 한정된 것이겠는가?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순조 21년(1821) 늦봄에 열수(洌水) 정약용(丁若鏞)은 쓴다.

❁ 제2부 ❁

율기(律記) 6조



1. 바른 몸가짐
2. 청렴한 마음
3. 집안을 다스림
4. 청탁을 물리침
5. 씩씩이를 절약함
6. 베풀기를 좋아함



1. 바른 몸가짐[飭躬]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道)이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풀어내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公文)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되, 사욕(私欲)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天理)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동이 트면 촛불을 끄고 그대로 단정히 앉아 있다가, 시중드는 종이 시

간이 되었다고 아뢰거든 창문을 열고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간혹 보면 소탈함을 좋아하고 구속됨을 싫어하는 자는 망건만 쓰고 두루마기를 걸치거나 혹은 망건도 쓰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아전과 백성을 대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시경(詩經)』에서는 “위엄있는 차림새를 갖춘 자는 덕(德)의 표현”이고, “공경하고 삼가는 차림새는 백성의 본보기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옛날의 도(道)이다. 위엄있는 차림새를 잃으면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없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관아(官衙)에서의 퇴근은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늦추고, 봄과 여름에는 조금 이르러야 마땅하다.

공사(公事)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켜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주자는 “오제공(吳濟公)은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가운데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정신을 함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요컨대 일이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느긋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현결(治縣訣)』에서는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의(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요(政要)』에서는 “벼슬살이에는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淸, 맑음)’이고, 둘째는 ‘신(愼, 삼가함)’이며, 셋째는 ‘근(勤,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였다.

여씨(呂氏)는 『동몽훈(童蒙訓)』에서 “임금을 나의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전을 나의 노복처럼 대하며, 백성을 나의 처자처럼 사랑하며, 공무를 집안일처럼 돌보아야만 능히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도의 범위 내에서 변통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그 법도가 나라의 기본 법전이 아니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고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선(鄭瑄)은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 함이요,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천한 자들을 부탁하려 함이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제 힘으로 먹고 살면서 제 일을 경영하고,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제가 쓰니, 하늘이 오히려 너그럽게 볼 것이요, 부귀한 사람은 벼슬을 하여 녹을 먹되 한민(한 사람)의 피땀을 한 사람이 받아쓰니, 하늘이 그 허물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 엄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지(韓祉)가 감사로 있을 때 막료들이 아침인사를 오면, 밥상을 내려 주고 술을 들린 다음에는, “내가 어제 한 일 가운데 무슨 허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다. 막료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는 데도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하였거늘, 10여 명의 의견이 어찌 반드시 내 의견과 똑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어서 말하라. 말해서 옳다면 좋을 것이요, 그르다면 서로 토론을 다시 하여 깨우치는 바가 없

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색해서 말했다. 날마다 이같이 물으니 막료들이 미리 의논해 들어와 고하였고, 그 말이 옳으면 비록 대단히 중요하여 고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에 따랐다. 언제나 "천하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 것이다.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움직이고 정지하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모두 살피어 의심쩍게 탐색하는 법이니,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고을로, 고을로부터는 사방으로 새어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안에서도 말을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벼슬살이할 때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시중드는 아이가 어리고 시중드는 종이 어리석다 하여도, 여러 해를 관청에 있으면 백번 단련된 쇠와 같아서, 모두가 기뻐하고 영리하여 엿보아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다. 관아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세한 것도 모두 전하고 누설한다. 내가 10여 년 동안 읍내 바닥에서 귀양살이하면서 그 실정을 알게 되었다. 『주역(周易)』에서는 "군자가 집안에 살면서 그 말이 선(善)하면 천리 밖에서도 이에 응하고, 그 말이 선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이를 어기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시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계하고, 너의 말을 삼가라"고 하였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조심해야 한다.

사방의 풍속이 각기 다르니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거슬리겠지만, 그래서 꾸짖고 화를 낸다면 역시 견문이 좁고 괴팍한 것이다. 수

령이 악인을 만나서 "이곳의 인심이 순박한데도, 네가 그것을 어지럽히니 죄가 더욱 중하다"고 꾸짖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이지만, 수령이 "이곳 인심이 극악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꾸짖으면 사람들이 다 노여워할 것이다. 실현하여 못사람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역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물며 그 이른바 극악하다는 것은 모두 썰이나 소금, 오이나 채소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인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포학스럽게 대하는 자나 법을 어긴 자에게는 노여워하지도 않으면, 어찌 못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것인가?

아랫사람을 너그럽이 대하면 순종치 않는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禮)를 차리는 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볼 것이 무엇 있겠는가"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벼슬살이에는 위세와 사나움을 앞세우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는 속된 말이다. 먼저 사나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스스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이니, 내가 형벌을 쓰는 것은 각기 그 죄에 합당한 것뿐인데 어찌 위세와 사나움을 앞세울 것인가? 『시경』에서 "그대의 위의(威儀)를 공경히 하여 '편안하고 착하게[柔嘉] 하라'고 이른 것처럼, 편안하고 착한 기상이 가장 좋다. 전에 내가 조정에 있을 때에 공경대신(公卿大臣)들을 보면 언제나 그 말씨와 안색이 편안하고 착한 듯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옛사람들만 못할지라도 역시 편안하고 착한 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을 얻고 높이 오르지만, 우

악스럽고 사나운 자는 대부분 중도에서 넘어진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고 착한 것이 좋은 기상인 줄 안다.

관부(官府)는 엄숙해야 하는 법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안된다.

수령의 지위는 존엄한 것이므로, 아전들은 엎드리며 백성들은 뜰 아래에 있게 되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수령의 곁에서 간여할 수 있겠는가? 비록 자제(子弟)나 친척,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예(禮)에 알맞다. 공청(公廳)에서 물러나온 한가한 낮이나 고요한 밤에 일 없을 때에 불러서 만나보는 것은 괜찮다.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진중해야 한다.

동진의 사안(謝安)은 조카의 승전보고를 듣고도 바둑두기를 그치지 않았고, 후한의 유관(劉寬)은 새로 지어 입은 조복에 누군가 국을 엮질렀으나 놀라거나 성내지 않았으니, 모두 평상시에 충분히 생각하고 헤아려 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당해서도 당황하지 않은 것이다. 관아 안에 호랑이나 도적이 들거나, 수재나 화재가 나고 담장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내려앉고, 혹 지네나 뱀이 요 위에 떨어지거나 시중드는 아이가 잘못하여 물을 엮지르고 술잔을 뒤엎는 일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고요히 앉아서 천

천히 그 까닭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암행어사가 출도(出道)하거나, 좌천이나 파면 등 죄를 묻는 통보서가 갑자기 오더라도 말씨나 안색을 달리하여 남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나라의 배도(裴度)가 중서성(中書省)에 있을 때, 갑자기 도장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는 여전히 술을 마셨다. 얼마 후에 다시 제자리에서 도장을 찾았다는 보고를 듣고도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이는 필시 아전이 도장을 훔쳐 문서에 찍은 것인데, 급하게 되면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렸겠지만, 늦추어주니 도로 제자리에 갖다놓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술을 끊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정하고 위엄있기를 큰 제사 받들 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기므로써 거칠고 방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송나라의 매지(梅摯)가 소주(韶州)를 맡아 다스릴 때에 벼슬살이의 고질병에 관한 글을 지어 말하였다. “벼슬살이에는 다섯 가지 병통이 있다. 급히 재촉하고 함부로 거두어들여 아랫사람한테 끌어다가 위에 갖다바치는 것은 조세의 병통이요, 엄한 법조문을 함부로 둘러대어 선악을 명백히 가리지 못하는 것은 형옥(刑獄)의 병통이요, 밤낮 술잔치에 빠져 나랏일을 등한히하는 것은 음식의 병통이요,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사로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재물의 병통이요, 많은 계집을 끌라 노래와 여색을 즐기는 것은 음란의 병통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백

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할 것이니, 편안하던 자는 반드시 병들고 병든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벼슬살이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풍토의 병을 탓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客氣)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마시는 버릇이 오래 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면 주정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폐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소리와 군소리는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제나 친척, 손님들이 기생과 가까이하는 것은 더욱 엄히 막아야 할 일이니, 금계(禁戒)를 아주 엄하게 하면 설사 어기는 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계를 어긴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고 밀실에서 책망하며, 그 다음날 말을 내어주고 행장을 꾸려서 곧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편이 될 것이다.

노래와 음악은 백성의 원망을 재촉하는 풀무이다. 내 마음은 즐겁지만 좌우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고, 좌우의 마음이 다 즐겁더라도 온 성안 남녀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으며, 성안의 마음이 다 즐거울지라도 온 고을 만민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라도 춥고 배고파 고달프거나 혹은 벌을 받아 울부짖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고 참담하여 세상 살아갈 즐거움이 없는 자가 있어서 풍악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길

바닥에다 욕을 퍼붓고 하늘에다 저주할 것이다. 배고픈 자가 들으면 배고픔을 더욱 한탄할 것이요, 간혀 있는 자가 들으면 간혀 있음을 더욱 슬퍼할 것이다.

수령으로서 부모를 모신 자가 가끔 부모의 생신날에 풍악을 베푸는데, 자신은 이를 효도라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하기 마련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를 저주하게 한다면 이는 불효가 아닌가? 부모의 생신날에 고을의 모든 늙은이를 위로하는 잔치를 겸해서 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詩)나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政事)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

김현성(金玄成)이 여러 번 주군(州郡)을 맡아 다스렸는데, 손을 씻은 듯 깨끗하게 직책에 봉사하여 청렴한 소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실무에는 익숙하지 못했고 성품이 심히 소탈하고 너그러워 매질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담담하게 동헌(東軒)에 앉아 종일 시를 읊조렸다.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김현성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지만 온 고을이 원망하여 탄식하고, 티끌만한 것도 사사로이 범하지 않되 관청 창고는 바닥이 났다”고 하여, 이 말이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당나라의 영호도(令狐綯)가 이원(李遠)을 항주자사(杭州刺史)로 천거하자, 임금이 “내가 들으니 원(遠)의 시에 ‘온종일을 오직 한판의 바둑으로 소일하노라’고 하였다는데, 어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영호도가 “시인이 흥에 겨워서 그러한 것이지, 사실이 반드시



후원에서 시를 읽고
비독을 두며 소일하는 양반들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임금의 "우선 보내어 시험해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바둑은 그나마 고상하고 운치 있는 취미이다. 근래의 수령들은 정당(政堂)에서 저리(邸吏)나 읍내의 건달들, 하인 무리들과 더불어 투전(鬪錢) 놀음으로 날을 다하고 밤을 새우니, 체모의 손상이 이렇듯 극심해졌다. 아아, 장차 어찌할 것인가?

2. 청렴한 마음[清心]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 조선조에 청백리(清白吏)로 뽑힌 사람이 모두 110명인데, 태조 이후에 45명, 중종 이후에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었다. 경종 이후로는 드디어 이렇게 뽑는 것조차 끊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400여 년 동안에 예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한 자가 거의 몇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청백리로 뽑힌 사람이 겨우 이 정도니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상산록』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 또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최하는 무릇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를 먼저 짓지 않으며, 향임(鄉任)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논밭에 감해주는 세금을 훔쳐먹거나 곡식을 가지고 농간부리지 않으며,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먹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관리가 모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최상이 진실로 좋지만,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것을 해도 좋다. 이른바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했을 것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仁者)는 인(仁)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비록 재물을 얻는 데 뜻을 둔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늘 보면 지혜와 문벌이 화려하고 재주와 덕망이 가득한 사람이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가서 10년이 지나도록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록 세력이 높고 때를 잘 만나 형벌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론은 그 비루함에 침을 뱉으니 명망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문신이 이렇게 되면 가장 영예로운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벼슬을 얻지 못하게 되고, 무신이 이렇게 되면 장수가 되지 못한다.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송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주워서 자한(子罕)에게 바쳤으나, 자한은 받지 않았다. 농부가 “이것은 농부들의 보배입니다. 바라옵건대 상공께서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거듭 청하니, 자한이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대와 내가 모두 보배를 잃는 셈이네”라고 답하였다.

공의휴(公儀休)가 노나라 재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보내왔으나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재상께서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사운데, 어찌하여 보내드린 물고기를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공의휴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오. 이제 재상이 되어서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물고기를 받아서 도리어 면직이 되면 다시 누가 나에게 물고기를 주겠소? 그래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

명나라의 풍유룡(馮猶龍)은 “천하의 한없이 못한 짓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하는 데 따라 일어나고, 천하의 끝없이 좋은 일은 모두 돈을 버리는 데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선(鄭瑄)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기를 탐내는 자가 만족을 모르는 것은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여 죽한 것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며, 대울타리 띠집은 돈 쓸 일이 없으며, 책을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 데 돈이 요구되지 않으며,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이 남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한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정선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근래 사대부가 밖으로는 공명(功名)을 낚고 안으로는 재산을 경영하며, 천 칸이나 되는 넓은 집채에 기름진 밭이만 경(頃)이나 되고, 남자중은 개미떼 같고 비첩(婢妾)은 구름과 같은데, 입을 열면 인성(人性)과 천리(天理)를 고상하게 담론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함을 자부하니, 비록 석가모니처럼 장중한 말을 혀끝에 올린다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고려의 나득황(羅得璜)이 백성들의 살을 깎아내듯 세금을 긁어모으면

서 최항(崔沆)에게 아첨하여 제주부사(濟州副使)가 되었다. 송소(宋召)가 제주 수령을 지내다가 횡령죄로 면직되고 나득황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 큰 도적을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이기(李璽)의 『송와잡설(松窩雜說)』에 이르기를, “국초(國初)에 함경도는 야인(野人)과 접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령을 모두 무관에서 뽑아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게다가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낄 것 없이 형벌과 세금을 가혹하게 하였다. 간혹 문관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자가 극히 드물어서 백성들은 그들을 낮도적이라고 하였다. 어떤 함경도 사람이 처음 서울에 와서 성균관(成均館) 앞길에 이르자 동행에게 ‘이곳은 어떤 관청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동행이 ‘이곳은 조정에서 낮도둑들을 모아서 기르는 못자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비록 지나친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자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암쇄화』는 이르기를, “백련사(白蓮寺)에는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중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일산(日傘) 그늘 밑에는 큰 도적이 있고, 목탁소리 뒤에는 참 중이 적다’라는 시 구절을 외었다”라고 하였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들은 늘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뇌물을 혼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

자마자 마구 떠벌려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삼시 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昌邑)의 수령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근을 품고 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라고 대답하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진(晉)나라 격(曷) 고을의 수령 원의(袁毅)가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을 주고 명예를 사고자, 일찍이 산도(山濤)에게 실 100근을 보냈다. 유별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산도는 그냥 실을 받아 들보 위에 얹어놓았다. 나중에 원의의 일이 탄로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몇해가 지났기 때문에 실은 먼지가 끼어 누렇게 검게 변했지만, 봉인(封印)은 처음 그대로였다.

과격행 행동과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아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것이 아니다.

정선은 “사대부들이 덕(德)을 손상하게 되는 것은 이름을 내려는 마음

이 너무 급한 데서 오는 일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북제(北齊)의 고적간(庫狄干)의 아들인 고적사문(庫狄士文)은 성질이 깨끗하고 모질어서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관청 주방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을 200대나 때린 후에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그는 또 벼 한 자, 곡식 한 말의 부정도 용서하지 않고 위에 아뢰어 모두 영남(嶺南)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1천 명이나 되는 귀양간 사람들 모두가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 친척들이 울부짖었다. 고적사문은 그들을 잡아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이 가득 쌓였지만 울부짖음이 더해갈 뿐이었다. 임금의 이를 듣고 “사문의 포악함이 사나운 맹수보다 더하다” 하고 파면시켰다.

정선이 말하기를, “전에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은 그래도 살길이 있으나, 청렴하면서 각박하면 곧 살길이 막힌다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한 관리의 자손이 많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관가가 정한 가격기준이 너무 험하면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관에서 정한 가격은 대개 험하고 박한 것을 따르게 마련이고, 혹 그중에 후한 가격을 따른 것이 있어도 관에서는 쓰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물건값의 높고 낮음은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관의 가격기준은 한번 정하여 백년이 되도록 고치지 않으니, 그 시세에 알맞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값이 박하면 아전들이 괴롭고, 아전이 괴

로우면 백성을 괴롭히니 결국 백성들에게 그 해(害)가 돌아간다. 아전이야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대개 아전의 됄됨이는 즐거우면 나아가고 괴로우면 물러서는 법인데,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이란 즐거워도 머물러 있고 괴로워도 떠나지 못한다. 몸이 토지에 박혀 마치 밧줄로 묶여 매를 맞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곳을 떠나지 않더라도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어 부역을 면제받은 마을들, 이른바 계방(契房)이 날로 늘어 부역의 공평치 못한 괴로움 때문에 백성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수령이 이 폐단을 없애려고 하면, 아전들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고 말한다. 내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하나는 모든 고을에서 감사에게 아첨하여 섬기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관의 가격기준에 따라 억지로 정한 물건값이 공평하지 못한 데 있다. 아전들은 손해를 보면 반드시 물러난다고 하고 수령이 그들을 만류하려면 반드시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데, 위로는 차마 자기 이익을 떼어 내놓을 수 없고 아래로는 세금을 더 매길 수 없다. 그래서 한 마을을 아전에게 떼어주어 계방을 삼게 하니, 천하에 교사스럽고 비루하고 인색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하는 모든 수령은 계방을 타파하려고 하지만, 일단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또한 모두가 잠자코 포기하니, 그 근본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는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관아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 자질구레한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결코 관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일일이 들 수 없으니, 모름지기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천리에 어긋나고 왕법(王法)에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된다. 혹 여러모로 구애되어 혁파하기 어려운 것은 비록 고칠 수는 없더라도 나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수령의 생일에 여러 아전과 군교 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아전과 군교 들이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의 고기를 빼앗으며, 촌락의 개를 때려잡기도 하고, 메밀과 기름을 절에서 뺏어오기도 하고, 주발과 접시를 질그릇집에서 가져오기도 하니, 이것은 원한을 거둬들이는 물건인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혹 유기(鑪器) 한벌과 삼베 몇곳이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욱 받아서는 안된다.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늘 보면 청렴하되 똑똑한 체하는 사람은 잘못된 전례에서 생긴 재물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거나, 자기의 봉록을 떼어내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그 일이 비록 잘하는 일이기도 하나 반드시 뽐내면서, “사대부가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느냐?”고 큰소리친다. 아전이 혹 전례를 들어 설명하면 반드시 꾸짖고 곤장을 쳐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낸다. 또한 “남은 봉록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전답을 살 수 있겠는가?” 하며 큰소리로 과장하고, 얼굴에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짓고 백성을 대하고 손님을 대할 때 항상 과시하여 그 마음에 수백냥 돈을 대단한 물건이나 되는 듯이 여기니, 식자(識者)들이 곁에서 보면 어찌 속으로 웃지 않으리오. 무릇 재물을 회사하고 봉록을 떼어내어 쓰더라도 마땅히 지나가는 말로 몇마디 해당 아전에게 분부할 뿐이고 다시는 들추어 말하지 말 것이다.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 정도 내어놓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말머리를 돌려 다른 일이나 이야기하여 다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청렴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없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아전과 종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오직 욕심만 있고 천지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 내가 바야흐로 힘써야 하는데 어찌 남을 책망하겠는가? 나를 예(禮)로써 규율하고 남을 보통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에게 세를 더 받아내는 것은 법이

마땅히 엄금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상적인 수입으로 생각하던 것은 많이 줄여야 한다.

조극선(趙克善)이 수령으로 있을 때, 아전이 관청의 매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매 한 마리를 사서 바치니, 그가 “매가 스스로 날아갔을 뿐인데, 네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것을 물리치고 불문에 붙였다.

『상산록』에서는 “늘 보면 속된 수령이 궁한 친구와 가난한 친척을 만나면 자기의 봉록을 떼어 도와주려 하지 않고, 따로 그 사람에게 일거리 하나를 장만해주어 그 청탁을 들어주니, 이는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족속을 구하는 것이다. 비록 그 족속이 적지 않은 전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고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3. 집안을 다스림[齊家]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인들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는 몇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은 반드시 검소하게 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閨門)은 반드시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데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목에 법도를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가히 알 만하다.

『속대전(續大典)』에 “수령 가운데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간자와, 관비를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해서 파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고하건대 국전(國典)에 가족을 많이 거느리는 것을 금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규정한 바는 없다. 마땅히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처 외에는 아들 1명만 허용하되, 미혼 자녀들은 모두 허용하고, 사내종 1명, 계집종 2명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부모·처자·형제를 육친(六親)이라 한다. 위로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아래로 식객(食客)을 거느리고 또 노비까지 데리고서 온 집안이 이사해 간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 꼬여 사사로운 일 때문에 공무가 가려지고 정사가 문란해질 것이다. 옛날의 어진 수령들이 가족을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직 부모가 연로하셨으면 잘 봉양하는 데에 힘쓸 것이나, 그밖의 일들은 간략함을 좇아야 할 것이다.

의복의 사치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요 귀신이 미워하는 것이니 복을 깎는 일이다.

주신(周新)이 절강(浙江)의 안찰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부하직원이 구운 거위를 선사하였다. 그는 그 구운 거위를 집에 걸어두고 후에 또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키곤 하였다. 함께 있는 관속의 부녀자들의 연회에 모든 부인들이 성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오직 주신의 부인

만 나무비녀에 베치마 차림으로 참석하니 마치 촌부인 같았다. 도리어 성장한 부인들이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후부터 담박한 의복으로 같이 입었다 한다.

형악(衡岳)이 경양(慶陽)을 맡아 다스릴 때에 여러 부인들이 모여 연회를 가졌다. 모든 부인들이 금불이와 비단으로 찬란하게 치장했는데, 오직 공의 부인만 나무비녀에 베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잔치가 끝난 후 부인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공이 “부인은 어디에 앉아 있었소?”라고 물었다. 부인이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대답하자, 공은 “이미 윗자리에 앉았으면서 또 의복까지 화려하게 꾸미기를 바란단 말이요? 부귀를 겸할 수가 있겠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한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은 것이다.

나의 지위가 높아지면 아내와 자식부터 나를 속이고 저버리게 된다.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아내가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 속이고 저버릴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혹은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은 재물에 유혹되기도 하므로, 청탁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아녀자의 인(仁)이다. 살을 찌르는 듯한 통절한 참소로 어떤 아전을 제거하라 하기도 하고, 혹은 쓸 만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혹은 ‘갑’에 대한 판결은 여론이 원통하다고 하고, 혹은 ‘을’의 옥사(獄事)는 원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아래에 있는 간사한 자들이 온갖 계교로 이간질을 한다. 그러면